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 2024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경 상 남 도  
(친환경농업과)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 I. 사업개요

### 1. 목 적

-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2. 근거법령

-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09 ~ '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년 이후
합 계	5,019,844	3,984,844	275,000	275,000	250,000	235,000	계속
도 비	2,171,922	1,937,422	82,500	55,000	50,000	47,000	계속
시군비	2,847,922	2,047,422	192,500	220,000	200,000	188,000	계속

## II.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업인 등으로서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경상남도 내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2023년까지 신청하여 농가에서 재배 중인 종자 또는 시군담당자의 토종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함

### 3. 지원대상

- 2024년도 사업기간(1월~12월)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목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사업기간 이전에 파종한 작물(동계작물)은 이행점검시 생육·수확을 확인(4~6월)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해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해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 5. 재원 및 지원형태

- 재 원 : 도비 20%, 시군비 80%  
※ 도비·시군비 부담률은 사업수요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도 → 시·군)

#### 6. 지원기준 등

- 지원대상 : 17개 품목
  - 일년생(17) : 토란, 메밀, 울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팍,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앓은뱅이밀
  -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며, 2025년부터 신규 재배농가 신청을 받지 않음(기존 지원농가는 최대 5년간 지원)
- 지급단가 : 250원/m<sup>2</sup>
  - 앓은뱅이밀 : 200원/m<sup>2</sup>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330m<sup>2</sup>이상  
다만, 여러 필지에 토종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330m<sup>2</sup> 미만 이더라도 동일 품목에 대해 인접한 필지와 재배면적 합이 330m<sup>2</sup>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 지급상한액 : 농가당 150만원 이내 ※ 앓은뱅이밀 지급상한액 : 농가당 100만원 이내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가능 : 기본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제외 및 지급방법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의 지원 제외 대상 :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목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단, 가뭄 등 불가피한 천재지변의 경우 50% 미만 수확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농지
  - 지목이 농지(전답, 과수원)로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
  - 그 밖에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

○ 지원제외 대상

-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 시비,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 농가당 최소재배 면적기준 330㎡미만인 경우

**7. 토종농산물 종자확인 방법**

-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공급종자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자가종자 : 시·군 확인
- 전년도(당해 사업연도 기준)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에서 재배한 품목을 분양받은 농가 : 시·군 확인(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 토종농산물 종자 교환센터 운영)
  - [별지 제6호 서식] 을 사업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 및 확인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경상남도

- 토종농산물 품목지정 및 지급기준 공고('24. 1월)
-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24. 2월 초)
-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제 신청 및 홍보('24. 2월)

##### 시·군

- 시장, 군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4. 2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기존 재배 농가, 여성 농업인, 귀농·귀촌인들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토종농산물 재배신청('24. 2월, 농지소재지 시·군, 읍·면·동)
  - 신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 전년도 재배농가의 토종농산물을 분양받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토종농산물 종자분양 확인서를 함께 제출

#### 2. 사업자 선정단계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사는 시·군 신청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및 지급 단가결정 통보 (도 → 시·군, 3월)

##### 시·군

- 토종농산물 재배 신청내역 제출(시·군 → 도, 3월 [별지 제2호 서식])
  - 시장·군수는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서류 및 토종종자 여부를 확인
  -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 부적격자 및 부적격 품목, 재배면적, 부적격 필지 등
    - ① 신청인의 주소 확인
    - ② 실경작자 여부(농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부 등 대조) 확인
    - ③ 최소 재배면적 및 최대 지급대상 면적 확인
    - ④ 도 지정 토종농산물 품목 여부 확인
    - ⑤ 신청 필지의 공부상 면적 및 재배신청 면적, 지목 확인
  - 농업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토종농산물 종자 여부에 대한 확인
    - ① 2023년까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서 공급한 토종종자 수령여부 확인

- ② 전년도 재배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재배한 종자여부 확인
- ③ 자가보유종자, 타 기관 및 단체 분양 토종종자 여부 확인
- ④ 재배희망 농가가 전년도(당해 사업연도 기준)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재배한 토종종자를 분양받았음을 확인[별지 제6호서식]

\* 처리절차 : 재배 희망농가 수요조사(사전 또는 신청 시) → 종자수요 농가와 공급농가 간 연결 → 시·군(읍·면·동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인도·인수 → 토종농산물 종자분양확인서 작성 및 비치

\* 앓은뱅이밀의 경우, 토종종자 분양 및 파종 여부 확인 후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시·군 → 신청인 3. 31까지)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필지/품목의 변경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필지 : 직불제 신청 시 지번 오류로 사업대상 필지를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신청면적보다 초과할 수 없으며 시·군(읍·면·동)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품목 : 종자확보 애로 등으로 사업대상 품목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신청 시 해당 농업인의 명의로 종자확인 절차를 거친 품목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시·군(읍·면·동)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처리요령 및 절차>

- 변경신청(농가) → 사실 확인(읍·면·동) → 변경승인(해당 농업인에게 통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관리대장상에 표기)

###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	시 기 (변동가능)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24. 2월 초)	·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도)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동)
② 사업신청	('24. 2월)	· 토종농산물직불제 신청 (농업인 → 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신청결과 취합 및 보고	('24. 3월 중)	· 사업신청결과 취합 · 신청결과 보고(시·군 → 도)
④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24. 3월 말)	· 시·군별 사업량 배정통보(도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를 농업인에 통보 (시·군 → 신청인)
⑤ 이행점검	('24. 4월 ~10월)	·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담당공무원지정 관리 (시·군, 읍·면·동) · 토종농산물 파종, 생육, 수확에 대한 이행점검 (시·군, 읍·면·동) * 사업기간 이전(전년도) 파종한 (동계)작물은 생육, 수확 이행점검 ·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제 관리대장 관리 (시·군, 읍·면·동) * 필요시 도, 시·군 합동점검 또는 교차점검 실시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24. 10월 중순)	· 직접지불금 지급신청 (사업자 → 시·군, 읍·면·동) · 이행상황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 확정 후 소요예산액 신청 (시·군 → 도)
⑦ 보조금 지급	('24. 11월 초)	· 보조금 지급(도 → 시·군 → 농업인)
⑧ 추진실적 보고	('24. 12월)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시·군 → 도)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 경상남도

- 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도 → 시·군, '24. 5월)

##### 시·군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는 이행사항 점검결과 사업대상자 변경, 농가당 지급한도, 토종여부, 수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 직불금 소요액 지급 요청(시·군 → 도, '24. 4월)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시·군별로 지급소요액을 경상남도에 요청
- 직불제 사업 정산 및 추진실적 보고[별지 제4호 서식]  
(시·군 → 도, '24. 12월)

##### 사업대상자

- 직불금 사업 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24. 2월 중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해당 필지에 해당 품목을 재배·수확한 경우 직불금 지급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경상남도, 시·군)

-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제 신청자가 토종농산물 여부 확인 시 토종이 아님이 판정되거나 자진 포기한 경우,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토종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별지 제5호 서식)
  - 작성 및 비치 : 원본(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본(시·군)

##### 《제 재》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반납 조치





##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당초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신고인 (단체)	단 체 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당초 사업대상자 (단체)	단 체 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b>농 지 현 황</b>							변경일자
농지소재지			면적(m <sup>2</sup> )	공부상목	재 배 품 목		
읍.면.동	리.동	지번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대상자가 ( _____ ) 사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b>시장·군수 귀하</b>							
※ 첨부서류 : 관련 증빙서류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 서식]

##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관리대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연번	품목	재배농지			공부상 면적 (m <sup>2</sup> )	이행상황 점검결과			이행면적 (m <sup>2</sup> )
		읍면	리동	지번		신청면적 (m <sup>2</sup> )	불이행 면적(m <sup>2</sup> ) 사유		
①									
②									
③									
④									
⑤									
합 계									
지급 확정	신청면적(m <sup>2</sup> )			지급대상 면적(m <sup>2</sup> )		직불금지금액(원)			
	계	일년생		계 (B)	일년생 (A)	계	일년생 (A*단가)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사 진 대 장		
연번	파종기 또는 생육 초·중기	수확기(생육말기 ~ 수확)
①		
②		

※ 재배품목 또는 재배농지가 많을 경우 연속하여 사진대장 서식에 의거 별지작성

## 토종농산물 종자분양 확인서

재배 희망농가(인수인)					전년도 재배(직불금 수령)농가(인도인)				
농가명					농가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품목	재배 희망현황				종자분양량 (ℓ, 본)	전년도 재배(직불금 지급대상)현황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상기 토종종자에 대해 인도·인수 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인도인 : (서명 또는 인)

인수인 : (서명 또는 인)

입회공무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신청·접수



인도·인수 농가 간  
분양사실 확인



종자분양(인도·인수) 확인서 적성 및 비치  
(토종농산물 재배영농계획서 또는 관리대장 첨부용)